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90

발의연월일: 2020. 11. 30.

발 의 자: 박영순 · 어기구 · 양정숙

김승원 · 홍기원 · 이학영

안민석 • 문진석 • 임호선

황운하 • 박범계 • 장철민

김용민 의원(13인)

제안이유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 등 그간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탁·수탁차주들(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부정수급 및 주유업자의 공모·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자등의 유 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 강화 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의 범위에서 유 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2호).
- 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
 - 1)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 2) 주유업자등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66조제3호).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해당"을 "5년의 범위에서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제66조 중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을 교부받은 자
- 3.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 업자등

제6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등) ①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 -----5焆-----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 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5년의 범위에서 해당----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 지시킬 수 있다. <단서 신설> -----. 다만, 주유업자등 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 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가담 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

③ ~ ⑤ (생 략)

제66조(벌칙) 제14조제4항(제33조 저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8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ĭ	<u>-</u>	유	류-	구대	州 ヲ	누드	의	ア	리	[フ]	능	을
Ċ	녕 -	구조	9.0	.로	정	지	하여	卢	ŀ	한	<u>다.</u>	
	3)	~	(5)) (현	행고	- 구	같은	<u>)</u>			
제6	62	돈(1	벌	칙)	<u>다</u>	음	각		호 9	기	어	느
5	하	구어		해	당	하는	<u>-</u>					
_												
_												
_												

-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위반한 자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의 화물자동차 유 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3.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

<u><</u>삭 제>